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I 최근 헌재결정 개요 - 근친혼의 무효와 과잉금지원칙

가. 대상 결정 :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1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해당 조항에 대해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개정해야 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판시함.

나.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다. 판단이유

- 심판대상조항은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거나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근친혼 금지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근친혼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지 아니한 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 획일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함.
- 또한 일방 당사자로부터 유기를 당하는 등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바 제한되는 사익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의 자유를 침해함.



II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2. 11. 17. 기준)

가.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총 40건)

● 총 40건 중 위헌 24건, 헌법불합치 16건 (개정시한 경과 3건 포함)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계
위헌	1	7	1	-	2	10	1	1	1	24
헌법 불합치	-	5(1)	1	1	-	7(2)	-	-	2	16

* ()는 개정시한 경과

나. 개정대상 법률의 주요 내용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주요 판단이유	심사경과
운영위	위헌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2022.1.27.	2018헌마1162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소위원회 2건
법사위	위헌	국가보안법 제19조	1992.4.14.	90헌마82	찬양·고무죄 등의 구속기간 연장	소위원회 2건 상임위원회 1건
		국가보안법 제13조	2002.11.28.	2002헌가5	찬양·고무죄 등의 재범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사형 규정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2018.8.30.	2014헌바148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미규정	소위원회 3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2019.2.28.	2016헌가13	관세법 위반 예비죄 가중 처벌	상임위원회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6항	2021.12.23.	2018헌바52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범 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신뢰관계 인 등에 의한 진정 성립을 인정	소위원회 7건
		행정소송법 제43조	2022.2.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 제한	상임위원회 1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주요 판단이유	심사경과
법사위	위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022.6.30.	2014헌마760등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	발의 없음
	헌법 불합치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2019.4.11. (2020.12.31.) *개정시한 경과	2017헌바127	자기낙태죄, 의사낙태죄 처벌	소위원회 6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2021.06.24. (2023.06.30.)	2018헌가2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의무 미규정	소위원회 1건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2021.06.24. (2023.06.30.)	2017헌바479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변동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소위원회 1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022.2.24. (2023.12.31.)	2018헌마998	위헌결정 후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한 보상요건 미규정	상임위원회 1건
		민법 제815조 제2호	2022.10.27. (2024.12.31.)	2018헌바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	상임위원회 1건
정무위	위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2022.2.24.	2020헌가5	정보요구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요구 행위 금지 및 처벌	소위원회 1건
	헌법 불합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2021.3.25. (2022.12.31.)	2018헌가6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수급권자 수를 1인으로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위원회 대안 (소위 의결)
과방위	헌법 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22.7.21. (2023.12.31.)	2016헌마388등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 부재	소위상정 2건 소위원회 12건 상임위원회 1건
국방위	위헌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본문	2021.11.25.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소위원회 2건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2022.5.26.	2019헌가12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위원회 대안 (소위 의결)
행안위	위헌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및 제41조 제4항	2014.1.28.	2012헌마431등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	소위원회 3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2018.8.30.	2014헌바180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	소위원회 1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주요 판단이유	심사경과
행안위	위헌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중 제22조 제2항 제5호 부분	2019.5.30.	2018헌가12	호별방문행위 금지 기간 정관위임	소위상정 1건 소위회부 2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2020.4.23.	2018헌마551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소위회부 4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및 제261조 제3항 제4호·제6항 제3호	2021.1.28.	2018헌마456등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관리자의 실명확인 미조치 시 처벌	소위상정 2건 소위회부 1건 상임위회부 1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중 제60조 제1항 제5호	2021.4.29. 2022.6.30.	2019헌가11 2021헌가2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상임위회부 1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2021.5.27.	2019헌가17	5·18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	소위회부 2건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2021.5.27.	2018헌마1168	회계보고 된 자료의 열람기간 제한	소위회부 2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021.11.25. 2022.5.26. 2022.5.26. 2022.8.31.	2019헌바446등 2021헌가30등 2021헌가32등 2022헌가18등	① 음주운전 금지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②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③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④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제한 없이 가중 처벌	소위회부 6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2022.7.21.	2017헌바357등 2018헌바164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금지	상임위회부 2건
	헌법 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제1호	2009.9.24. (2010.6.30.) *개정시한 경과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 금지	소위회부 2건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2014.7.24. (2015.12.31.) *개정시한 경과	2009헌마256등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 제한	소위회부 3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주요 판단이유	심사경과
행안위	헌법 불합치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2022.1.27. (2023.6.30.)	2019헌바161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 정지	소위원회 1건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2022.1.27. (2023.12.31.)	2020헌마895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절차 미규정	소위원회 2건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2022.7.21. (2023.7.31.)	2017헌가4	선거운동 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소위상정 1건 소위원회 2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2022.7.21. (2023.7.31.)	2017헌바100등 2017헌가1등 2018헌바357등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소위상정 1건 소위원회 2건 상임위원회 1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2022.7.21. (2023.7.31.)	2017헌바100등 2018헌바357등	일정기간 동안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벽보 게시 등 금 지	소위상정 1건 소위원회 2건 상임위원회 1건
문체위	위헌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2019.12.27.	2017헌가21	회원제 운영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 부과	위원회 대안 (법사위 계류)
농해수위	위헌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2022.8.31.	2022헌가10	음주운전 금지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제한 없이 가중 처벌	소위원회 1건 상임위원회 1건
복지위	위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제2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2호	2022.9.29.	2019헌마813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제한	발의 없음
	헌법 불합치	약사법 제20조 제1항	2002.9.19. (시한 없음)	2000헌바84	약국 법인 개설 금지	발의 없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2022.7.21. (2023.12.31.)	2018헌바504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포괄위임	발의 없음



III 위험·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1대 국회의 개정현황 (총 18건)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개정 내용 (본회의 의결일)
법사위	위헌	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1항	2017. 10. 26.	2015헌바239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 적용에 있어 해당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해당 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 → 해당 조항의 시행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개정 (2020. 9. 24.)
		변호사시험법 부칙(제15154호) 제2조	2019. 7. 25.	2017헌마1329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 이전에 합격한 자의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로 제한 →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합격발표일로부터 5년 내, 개정 변호사시험법 이전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정 변호사 시험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로 개정 (2020. 11. 19.)
	헌법 불합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20. 8. 28. (2021. 12. 31.)	2018헌마927	가정폭력 가해자인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증명서 발급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자에 대한 기관의 발급금지 의무 부과 (2021. 12. 9.)
		국적법 제12조 제2항	2020. 9. 24. (2022. 9. 30.)	2016헌마889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기간 제한 → 기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 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 (2022. 9. 1.)
행안위	위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2016. 6. 30.	2013헌가1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정 (2020. 12. 9.)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2018. 1. 25.	2017헌가26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 → 특정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개정 (2022. 10.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2020. 6. 25.	2019헌가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에 대하여만 취소하도록 개정 (2020. 12. 9.)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개정 내용 (본회의 의결일)
행안위	위헌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2021. 9. 30.	2019헌가3	혼인한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전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 → 해당 경과규정 삭제 (2022. 10. 27.)
		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제2항	2022. 2. 24.	2018헌바146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말이나 전화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 (2020. 12. 9.)
	헌법 불합치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및 별표2	2019. 2. 28. (2021. 12. 31.)	2018헌마415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변경에 따른 헌법 불합치 → 해당 선거구 지방의회의원 총정수 증원 및 선거구 구역표 조정 (2022. 4. 15.)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제3호 및 제216호 제1항	2019. 12. 27. (2021. 12. 31.)	2018헌마730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 사용에 대한 소음 규제 기준 미규정 → 확성장치 소음 규제를 위한 최고출력 및 제한 시간대 기준 마련 (2021. 12. 31.)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2019. 12. 27. (2021. 12. 31.)	2018헌마30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 제한 → 후원회 지정권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추가 (2020. 12. 9.)
복지위	위헌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2020. 8. 28.	2017헌가35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의 광고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 기기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021. 2. 26.)
	헌법 불합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2020. 12. 24. (2022. 12. 31.)	2017헌가22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부여 (2022. 5. 29.)
기재위	헌법 불합치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2018. 4. 26. (2019. 12. 31.)	2015헌가19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2021. 11. 11.)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2018. 4. 26. (2019. 12. 31.)	2016헌마116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금지 → 타법(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2021. 11. 11.)



소관 위원회	결정 유형	법률명 및 조항	선고일자 (개정시한)	사건번호	개정 내용 (본회의 의결일)
정무위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4항	2020. 6. 25.	2018헌바278	임원 선거운동의 구체적 기간 및 방법을 정관에 위 임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 허용되는 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 항을 정관이 아닌 총리령으로 위임 (2020. 12. 2.)
국토위	헌법 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2020. 11. 26.	2019헌바131	환매권 발생기간을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10년으 로 제한 →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고시일,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완료일부터 10년으로 기산점 개정 (2021. 7. 24.)